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류성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6
----------	-------

발의연월일 : 2022. 10. 14.

발의자 : 류성결 · 김상훈 · 김영선

김용판 · 배준영 · 안병길

윤영석 · 이양수 · 조해진

주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 팬데믹,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라 핵심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이동 장애가 빈발하고 있음. 한편,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불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공급망 위기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국가안보적 측면의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음.

공급망 안정화는 민간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이나, 수입선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등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개별적 교란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

한 상황임.

개별 분야 특별법 및 일반적 재정사업 지원 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첨단산업 원자재 및 중간재 뿐만 아니라 식량, 범용재, 물류 등 경제 전반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도 필요함. 특히, 경제안보에 중요한 핵심품목의 교란 발생 시에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공급망 안정 및 기업지원 대책도 필요함.

이에,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일반적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경제안보,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 서비스,

공급망 위험, 공급망 위기상황, 위기품목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0조).

마.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함(안 제13조).

바. 공급망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하며, 조기경보시스템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관세정보의 제공,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를 인정하고, 수입국가 다변화·국내외 생산기반 강화·기술개발·비축관리 등을 지원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위기발생 시 위기품목 지정·수급안정 조치·위기대책본부 운영·관

세지원 · 긴급조달 등 위기대응 조치를 시행함(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재원의 조성, 관리 · 운용,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차. 권한의 위임 · 위탁,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시행 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안보”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통상, 정치, 외교적 상황 변화나 자연재해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국가 및 국민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품목, 서비스, 기술 등이 원활히 유입되고, 부적절하게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이 유지되고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2.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3. “공급망 안정화”란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의 예방 · 대비 · 대응을 포함하여 공급망의 탄력적 회복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안보 품목”이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자원을 포함한다),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원재료 등”이라 한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말한다.
5. “경제안보 서비스”란 그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호에 의한 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도입 · 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 시설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6. “공급망 위험”이란 국내외 경제 · 통상 · 정치 · 외교적 상황의 변화, 자연재해나 물류 상의 장애 등으로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되어 상당한 기간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7. “공급망 위기상황”이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위기품목”이란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 · 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위기시 대응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목으로
서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법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원활한 공급망이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국가 및 국민
의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등의 원활한 유입·유
통·제공을 보장하며, 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치가 조화롭게 연계되도
록 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영위
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
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부가가치
세법」 제8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국민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경제안보 또는 공급망에 관한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정부는 국가 및 국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공급망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공급망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3년마다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유통·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시책
 5. 공급망 관련 국제 정세, 국제교역, 외국정부의 정책 변화 등 동향
 6. 경제안보 품목 및 경제안보 서비스(이하 “경제안보 품목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경제안보 품목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8.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시책
 10. 국내외 생산시설 투자 확대 등 생산기반 조성, 구입처 등 다변화, 비축, 기술의 도입·개량·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국제협력
 1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관 분야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 전에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시행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공급망 안정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급망 안정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등에 관한 사항
7. 제28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8.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 · 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가정보원장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 등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자와 원재료 등의 수급 및 가격 현황과 수출입 동향, 재고 현황, 국내외 사업자간 거래관계, 물류 체계, 물류비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제1항의 조사(이하 “공급망 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경제안보 품목 등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이 법 제18조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을 받거나, 이 법 이외의 다른 공급망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급망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망 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급망 현황조사의 결과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급망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경제안보 품목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 · 변경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의존도 현황 및 전망
2.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 및 전망
3. 공급망 위험이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외국 정부 또는 해외 공급자의 정책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5.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의 정도

6. 국내외 생산기반의 조성, 구입처의 다변화, 비축, 생산기술의 도입

· 개량·개발 등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가능성

7. 관련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경제안보를 위해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경제안보 품목 등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단,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 품목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제안보 품목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를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경제안보 품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중요도에 따른 분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은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자 및 원재료 등의 국내외 수급 동향 및 가격, 생산량의 변화, 외국 정부 또는 기업의 정책변경, 물류 또는 지급·결제의 장애 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1.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의 물자 및 원재료 등
 2.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물자 및 원재료 등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자 및 원재료 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정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43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 품목 등과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물자 및 원재료 등에 대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기관에게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 결과 등을 통보 및 공유하는 시기, 빈도 및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관리 실태를 총괄·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청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결과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품목 등의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등을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간 협력) 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및 공급망과 관련된 통계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제공의 범위,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세정보의 제공)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공급망 위기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하는 과세정보의 범위,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제안보 품목 등과 관련된 정보,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② 경제안보 품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신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18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 등) ① 경제안보 품목 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해당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안정화 계획이 기본계획 및 소관 경제안보 품목 등의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정화 계획을 제출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안정화 선도사업자”라 한다)로 인정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출한 안정화 계획의 담합 가능성, 경제력 집중 여부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정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통보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이 소관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이와 같

다.

- ⑤ 안정화 계획에 포함될 사항,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 기준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 취소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제11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해당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그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협의체의 구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정화 선도사업자간 정보교환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협의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안정화 선도사업자 간 정보의 전달 등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입국가 다변화 등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의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해외에서의 상황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대체수입국가 또는 대체수입지역의 확보
2.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해외 공급사업자의 관리
3. 수입국가 다변화를 위한 물류 등 비용 절감
4.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의 국내생산 확대, 대체 물자 등의 생산을 위한 기술의 개발 · 개량, 사용량 절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 · 개량
5. 수출제한 조치시 사전통보, 안정적 수급협약, 공동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해외국가와의 경제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경제안보 품목 등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2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생산 시설 축소
5. 국내 기업간·국내외 기업간 공동생산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제23조(기술개발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적 확보 및 유통을 위한 생산기술의 도입, 기술의 개발 및 개량, 사용의 합리화, 대체 물자의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3.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

하고, 사업자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는 경제안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기술개발사업 및 민간기술개발의 성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경제안보 품목의 비축·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 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 비축을 위한 국내외 설비의 확충(시설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2.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 확대
3. 비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4. 기타 국내외 비축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에게 추가적인 비축을 권고하거나 안정화 선도사업자와 협력하여 비축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기타 경제안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경제안보품목 등에 대한 지원 특례) ①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관세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지원 제도를 수립·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21조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의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

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거나 낮춘 안정화 선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상황 등 필요한 정보와 안정화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해당 안정화 선도 사업자가 복수인 경우 이들 간 협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22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 품목 등과 관련된 시설 또는 설비 확충의 시급성 ·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제23조에 따른 대체기술 개발 및 설비구축 등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기지 신설 · 증설 · 현대화의 시급성 ·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제5장 공급망 위기 및 대응

제27조(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 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비해 그 소관의 경제

안보 품목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 운용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 위기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대응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 · 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위기품목 지정 및 해제)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안보 품목 등을 포함하여 공급망 위험을 초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대응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수출입 및 물류·유통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기품목의 지정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급안정 조치) ① 정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기품목이 지정 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 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30조(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 품목의 지정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수급안정조치와 관련한 구입량 및 가격, 생산량, 재고 등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기대책본부)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기품목이 지정된 경우 제29조에 따른 수급 안정 조치 등 위기 수습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위기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신속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관계되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책본부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장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위기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대책본부장의 권한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① 위기품목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품목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시정 또는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3조(관세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 목의 경우 수급 및 수입가격의 안정을 위해 「관세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긴급조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기품목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구매(이하 “정부구매”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정부 구매 물량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매하는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물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대금 지급
2. 긴급수급조절물자 구매와 관계된 손실 보전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기품목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위기품목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정부가 위기품목의 수급·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손실 지원) ① 정부는 제29조에 따른 수급안정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실을 입은 자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그 손실을 발생시켰거나 확대시킨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와 지원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제37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품목 및 서비스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기술의 도입 · 개발 · 개량 · 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기타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 제42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 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제38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0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9조(기금의 관리 · 운용 및 회계)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 운용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 운용 및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기금의 지원대상 · 용도) ① 기금은 제37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 제18조제2항의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2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사. 제2호의 회사 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투자나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제42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수출입은행과 회사 등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지원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제40조의 용도에 따른 자금지원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운용계획

3. 결산보고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7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다른 법령상 조치에 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제5장에서 규정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의 비공개) ① 정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1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가 국가의 안

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1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정보를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46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
보를 알게 된 자

제47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
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8조(국제협력)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와의 경제·무역·자원에 관한 양자·다자협력
2. 대체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3. 외국정부 및 경제안보 품목 등의 동향 등에 대한 조사·연구
4. 공급망 위험 점검을 위한 인력·정보의 교류
5.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한 국제 학술회의 등의 개최
6.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기간)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신규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규정에 따른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